

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(명칭)	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신고내용	이륜자동차	차명	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	
	사용본거지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읍 · 면 · 동장 귀하

첨부서류	1.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) 1부	수수료
	2. 이륜자동차제작증(신규로 제작 · 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3.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4.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(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5. 실측확인서(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	없음

유의사항

-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1항).
-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1항제2호).